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7. ~ 9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”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 한다.

제5조, 제6조,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”를 “설정하고”로, “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대 시책과”를 “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여학생 중에서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와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”를 “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시행계획 등) ① 과학기술	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이	제4조(시행계획 등) ① -----		
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	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	-----		
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	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	----- 추진할 수		
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연도	별 시행계획 작성지침(이하 “시	있도록 하기 위하여 -----		
행계획 작성지침”이라 한다)을	정하고, 이를 매년 7월 31일까	-----		
지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	다.	----- 통보해야 -----		
② ~ ④ (생략)		--.		
제5조(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	회) 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	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	<삭 제>		
장관 소속으로 여성과학기술인	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			
다)를 둔다.				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	을 심의한다.			
1.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	계획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			

항

2. 법 제7조에 따른 이공계 진학
및 진출의 촉진과 그 지원에
관한 사항

3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학
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
방안에 관한 사항

4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
시책에 관한 사항

5. 법 제9조에 따른 우수한 이공
계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에
관한 사항

6. 법 제10조에 따른 여성과학
기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
사항

7. 법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조
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

8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성
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지원
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
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
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
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
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

<삭 제>

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·교육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행정안전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여성 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의2(위원의 해촉 등)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.

<삭 제>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
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
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
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
밝히는 경우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
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
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
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
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
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
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회
의 안건에 관한 내용을 회의 개
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
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
<삭 제>
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
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
는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
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
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
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
비율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
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
공계대학등(이하 “이공계대학
등”이라 한다)의 학위과정에 있
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
학부(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
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
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
다)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
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
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
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
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
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

제10조(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
비율) ① -----

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(이하 “목표비율”이라 한다)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,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대 시책과 그 대상 이공계대학등을 선정한다.

제11조(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을 선발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3조(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) ① (생략)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와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

----- 설
정하고-----

----- 통지해야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을 마련하고 -----

-----.

제11조(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) ① -----

-- 여학생 중에서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----- 시
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---

을 설정하여,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적극 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 록 <u>하여야</u> 한다. 1. ~ 3. (생략)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 <u>해야</u> 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841